참고 1 개별자동차 인증서 및 인증생략서 법정 서식

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[별지 제32호서식] <개정 2012.7.4>

인증번호 :

개별차량용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

<table>
<tr><td rowspan="3">수입자</td><td colspan="4">업체명</td><td colspan="2">성명(대표자)</td></tr>
<tr><td colspan="4">주소</td><td colspan="2">전화번호</td></tr>
<tr><td colspan="4">사업장소재지</td><td colspan="2">전화번호</td></tr>
<tr><td rowspan="8">인 증
사 항</td><td colspan="6">자동차제원</td></tr>
<tr><td>자동차명칭
(형상)</td><td>자동차형식
(용도)</td><td>엔진형</td><td>차종</td><td>사용연료</td><td>제작사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엔진배기량</td><td>최대출력</td><td>변속기</td><td>차량총중량</td><td>공차중량</td><td>선택사양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배출가스 방지장치 부착내용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※ 차대번호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6">인증조건</td></tr>
<tr><td colspan="6">1. 이 인증서는 ※란의 차대번호를 가진 개별차량에만 유효합니다.
2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1조에 따른 결함시정에 대비하여 자동차 구입에 대한 기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.
3. 자동차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제 성능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정비지침 제공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.
4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5. 열화계수 또는 지정열화계수:</td></tr>
</table>

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인증합니다.
(We hereby grant a certification pursuant to Para. 1, Article 32 of Air Environment Preservation Act and Article 71 of its Enforcement Regulation.)

년 월 일

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

210㎜×297㎜[백상지(150g/㎡)]

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[별지 제33호서식] <개정 2012.7.4>

인증생략번호 :

자동차배출가스 인증생략서

신청인	성명(대표자)			
	주소			전화번호
자동차제원 (Vehicle Specifications)	자동차명칭 (형상)		제 작 사	
	자동차형식(용도) (Vehicle Type, Use)		엔 진 형 식	
	엔진배기량		최대출력	
	차종/사용연료		변속기	
	공차중량		차량총중량	
	제원관리번호 (형식승인번호)		차대번호 (1~14자리)	

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4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생략합니다.

년 월 일

한국환경공단이사장 직인

210㎜×297㎜[백상지(150g/㎡)]

[별지 제15호서식] <개정 2010.6.30>

인증번호 제 호	개별자동차소음 인증서					
수입자	① 상 호 (명 칭)		② 성 명 (대표자)			
	③ 주 소	(전화번호:)				
	④ 사업장 소재지	(전화번호:)				
인증사항	⑤ 자 동 차 제 원					
	자동차명칭 (형 상)	자동차형식 (용 도)	엔진형식	차 종	사용연료	제 작 사
	엔진배기량	최대출력	변 속 기	차량총중량	공차중량	선택사양
	⑥ 소음방지장치 부착내용					
	⑦ 차대번호					
	⑧ 인 증 조 건					
	1. 이 인증서는 ⑦란의 차대번호를 가진 개별차량에만 유효합니다. 2. 자동차 소음 관련부품이 제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정비지침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. 3.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제3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					

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합니다.

년 월 일

인

210㎜×297㎜[보존용지(1종) 120g/㎡]

[별지 제16호서식] <개정 2010.6.30>

인증생략번호 제 호	자동차소음 인증생략서			
신청인	①성 명(대표자)			
	② 주 소	(전화번호:)		
③ 자동차 제원	자동차명칭		제작사	
	자동차형식		엔진형식	
	배기량		최대출력	
	차종/사용연료		변속기	
	공차중량		총중량	
	제원관리번호 (형식승인번호)		차대번호	

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생략합니다.

년 월 일

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인

210㎜×297㎜[보존용지(1종) 120g/㎡]

참고 2 자동차 배출가스·소음 인증 및 인증생략 체계

□ 일반적인 인증 체계

○ 국외 제작사로부터 직접 수입·판매하는 자동차 인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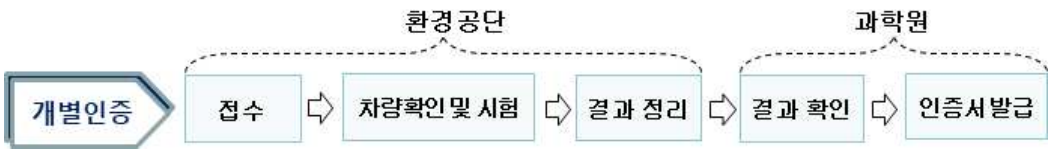
- 제작사의 시험결과 및 제원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인증서 발급(과학원)



□ 개별자동차 인증 및 인증생략 체계

○ (인증)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·판매하는 자동차에 대한 인증

- 수입된 차량을 시험(공단)하고 인증서 발급(과학원)



○ (인증생략) 개별인증 차량과 동일 제원의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시험 생략

- 인증생략 차량과 개별인증 차량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후 인증생략서 발급(공단)

